

9-72 원격미래교육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

[규정 명칭 변경 2020.06.29.]

2013.02.01. 제정

2022.07.05. 개정

주무부서 : 사회교육처 교육운영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원격미래교육원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원격미래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 이라 한다)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6.29.>

제2조(적용범위) 교육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, 교외장학재단 및 관계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행세칙에 의한다.

제3조(장학금액) ① 교육원의 장학금 총액은 매 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.
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별 지급액은 교육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4조(장학금의 구분)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② 교내장학금은 교비에 의해 편성된 장학금을 말한다.
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, 공공기관 및 기타단체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되고 지급대상이 지정된 장학금을 말한다.

제2장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

제5조(지급대상) 본 시행세칙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. <제목개정 2019.06.24>

1. 교육원 능력개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
2. 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
3. 기타 사회교육처장(이하 “처장” 이라 한다)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에서 허가하는 자

제6조(지급기준) ①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제목개정 2019.06.24>

1.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
2. 모범적인 품행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경우 <개정 2019.06.24>
3.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법령 및 협약 등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
 5. 해당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6.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
 7.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
- ② 장학금 지급은 학습비에 한하며, 실습비는 제외한다.
- ③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출연자의 출연목적에 적합한 경우로 하며, 지급방법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장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장 장학위원회

제7조(구성 및 기능) ① 교육원의 장학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: 처장
2. 위원 : 처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심의
2. 장학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
3.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

[본조 제목 개정 2021.04.]

제8조(의결) 장학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

제9조(공지 및 신청) ① 장학금 지급 규정(시행세칙), 장학금의 종류, 신청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<제목개정 및 조항신설 2019.06.24>

②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중에 장학금 신청서(별첨 서식1 또는 서식2)와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장학대상이 확정된 경우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19.06.24>

제10조(지급기간)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,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. <제목개정 2019.06.24>

제11조(지급방법) 장학금은 학습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,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습비를 기 납부한 경우 또는 특정 장학금에 경우에는 환불처리 할 수 있다. <제목개정 및 개정 2019.06.24>

제12조(중복지급 금지 및 예외기준) ① 장학금의 중복지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

한다. 다만, 학점은행제과정에 한하여 학습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. <제목개정 및 개정 2019.06.24>

②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6.24>

1. 교내 각종 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학습비를 초과한 경우 <개정 2019.06.24>
2.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<개정 2019.06.24>

제13조(지급제한)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. <제목개정 2019.06.24>

1. 학칙 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<제목개정 2019.06.24>
2.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
3. 학업성적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미달된 자
4.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 <신설 2019.06.24>
5.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된 자 <신설 2019.06.24>

제14조(지급 중지 및 회수) ①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. <제목개정 2019.06.24>

②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 후 환불(학습포기)의 경우에는 능력개발과정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를, 학점은행제과정은 「평가인정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 회수한다.

③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장학금은 재등록 시에 인정되지 않는다.

[전문개정 2019.06.24]

제5장 능력개발과정 장학금

제15조(장학금의 종류) 제5조 제1호에 의거 능력개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9.06.24>

1. 가족장학금
2. <삭제 2019.06.24>
3. 근로장학금
4. 기금장학금
5. 부속기관장학금
6. <삭제 2019.06.24>
7. 직계장학금
8. 특별장학금
9. 특성화장학금 <신설 2022.07.05.>

제16조(가족장학금) 가족이 2명 이상 능력개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지급기준 : 직전학기 출석률 70% 이상인 자(단, 1차 학기는 출석률 미반영)

2. 지급액 : 학습비의 30% <개정 2019.06.24>
3. 지급범위 : 부모, 배우자, 형제/자매, 자녀
4. 지급기간 : 가족의 동시 재학기간
5. 제출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

제17조(공로직계장학금) <삭제 2019.06.24>

제18조(근로장학금)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. 다만, 학습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6.24>

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(기금장학금)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(부속기관장학금)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적용대상 :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교직원, 중앙대학교병원 직원
2. 지급범위 : 과정별 수강인원의 10% 이내
3. 지급기준 : 직전학기 출석률 70% 이상인 자(단, 1차 학기는 출석률 미반영)
4. 지급액 : 학습비의 30% <개정 2019.06.24>
5. 지급기한 : 재학기간 <개정 2019.06.24>
6. 제출서류
 - 가. 재직증명서
 - 나. 가족관계증명서

제21조(중앙사랑장학금) <삭제 2019.06.24>

제22조(직계장학금) ①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(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), 직원(일반사무직, 기능직, 상용계약직),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지급액 등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급범위 : 과정별 수강인원의 10% 이내
2. 지급기준 : 직전학기 출석률 70% 이상인 자(단, 1차 학기는 출석률 미반영)
3. 지급액 : 학습비의 50%

4. 지급기한 : 재학기간
5. 제출서류
 - 가.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 - 나. 가족관계증명서

[본조 전문 개정 2021.04.]

제23조(특별장학금)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, 특별강좌 수강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및 출석이 성실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3조의2(특성화장학금) 능력개발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.

1. 능력개발과정의 학생모집 활성화 및 우수교육원생 유치를 위한 경우
2.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경우
3. 기타 과정 특성에 따른 경우

[본조 신설 2022.07.05.]

제6장 학점은행제과정 장학금<개정 2017. 3. 31.>

제24조(장학금의 종류) 제5조 제2호에 의거 학점은행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족장학금
2. <삭제 2019.06.24>
3. 근로장학금
4. 기금장학금
5. 보훈장학금
6. 부속기관장학금
7. 생활복지장학금 <신설 2017.3.31.>
8. 성적우수장학금
9. 재수강장학금
10. <삭제 2019.06.24>
11. 직계장학금
12. 특별장학금
13. 특성화장학금 <신설 2022.07.05.>

제25조(가족장학금)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지급기준 : 직전학기 평점 2.5이상(단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<개정 2019.06.24>
2. 지급범위 : 부모, 배우자, 형제/자매, 자녀

3. 지급액 : 학습비의 35%
4. 지급기간 : 가족의 동시 재학기간
5. 제출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

제26조(공로직계장학금) <삭제 2019.06.24>

제27조(근로장학금)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. 다만, 학습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6.24>

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8조(기금장학금)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

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9조(보훈장학금)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 손·자녀에게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(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)

1.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

가. 보훈 본인 및 배우자 : 성적 미반영

나. 직계 손·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: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(단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<개정 2019.06.24>

2. 지급액 : 학습비 전액

3. 제출서류

가.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(손·자녀)

나.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)

다.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(북한이탈주민) <개정 2019.06.24>

제30조(부속기관장학금)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적용대상 :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교직원, 중앙대학교병원 직원

2. 지급범위 : 과정별 수강인원의 10% 이내

3. 지급기준 : 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(단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<개정 2019.06.24>

4. 지급액

가. 본인 : 학습비의 50%

나. 배우자 및 직계자녀 : 학습비의 30%

5. 지급기한 : 재학기간 <개정 2019.06.24>

- 6. 제출서류
 - 가. 재직증명서
 - 나. 가족관계증명서

제31조(생활복지장학금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는 「별표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명서 기준에 의한다. <개정 2019.06.24>

- 1. <삭제 2019.06.24>
- 2. 지급기준 : 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(단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 <개정 2019.06.24>
- 3. 지급액
 - 가. 기초생활수급자 : 학습비의 50%
 - 나. 차상위 계층 : 학습비의 30%
- 4. 지급기간 : 재학기간
- 5. 제출서류: [별표]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명서 참조 <개정 2019.06.24>

제32조(성적우수장학금)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대상, 선발기준, 지급액, 선발조건, 지급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지급대상 : 5과목 이상 수강자
- ② 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액 <개정 2019.06.24>

선발기준	지급액
상위성적 10%이내인 자	학습비의 70%
상위성적 30%이내인 자	학습비의 50%
상위성적 50%이내인 자	학습비의 30%

③ 선발조건

- 1. 5과목 이상 수강자가 2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, 수강과목의 (상대평가로 환산된)총점평균으로 순으로 선정한다.
- 2. 총점평균이 같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.
 - 가. 과목수가 많은 자를 우선 함
 - 나. (상대평가로 환산된) 평균평점이 높은 자를 우선 함
 - 다. (상대평가로 환산된) 중간 및 기말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 함
 - 라. 총점평균과 평균평점의 정의 및 산출 근거는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6.24>
- 3. 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인원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④ 지급방법 : 매 개강 차수별로 성적우수 장학대상자를 정하고, 환불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
제33조(재수강장학금) 재수강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
- 1. 지급대상 : 학점은행제과정 수강자로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하는 자 <개정 2019.06.24>
- 2. 지급기준 : 수강학기 기준으로 2년 이내

3. 지급액 : 학습비의 50%

제34조(중앙사랑장학금) <삭제 2019.06.24>

제35조(직계장학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.

1.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(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), 직원(일반사무직, 기능직, 상용계약직),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 자녀
2.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임교원(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), 직원(일반사무직, 기능직), 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
3.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 이상 근무하고 순직·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(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), 직원(일반사무직, 기능직), 법인 임직원의 직계 자녀

② 지급액 등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급범위 : 과정별 수강인원의 10% 이내
2. 지급기준 : 직전학기 평점 2.5 이상(단,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)
3. 지급액 : 학습비의 100%(상용계약직은 학습비의 70%)
4. 지급기한 : 재학기간
5. 제출서류
 - 가.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 - 나. 가족관계증명서

[본조 전문 개정 2021.04.]

제36조(특별장학금)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6조의2(특성화장학금) 학점은행제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.

1. 학점은행제과정의 학생모집 활성화 및 우수교육원생 유치를 위한 경우
2.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경우
3. 기타 과정 특성에 따른 경우

[본조 신설 2022.07.05.]

제37조(기타)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장학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정 2013.02.01)

(시행일) 본 내규는 2013년 2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14.02.28.)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15.07.20.)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17.04.13.)

제1조 본 시행세칙은 ‘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내규’를 시행세칙으로 상위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주무부서를 ‘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’으로 변경하여 관리한다.

제2조 (시행일)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본 개정 시행세칙과 상이하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종전내규를 적용한다.

부 칙(개정 2019.06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20.06.29.)

「직제 규정」 개정(사회교육처 산하 교육원 명칭 변경)에 따른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 (개정 2021.04.20.)

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5조(직계장학금)의 개정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. 단,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.

③ (경과조치) 배우자의 경우 2020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자는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 (개정 2022.07.05.)

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증명서(제31조제1항제5호 관련)

구분	자격증	비고	발급처
기초생활 수급자	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※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포함	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'민원24' (minwon.go.kr)
차상위 계층	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	
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증명서	
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	주민자치센터
	차상위장애수당/ 장애아동수당대상자	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	
	차상위자활대상자	자활근로자 확인서	
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
	차상위 계층 대상자	차상위 계층 확인서	주민자치센터